



발명으로 만드는 일자리,
특허로 더하는 행복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과 장 류동현 사무관 유철중	042-481-5879 042-481-5918
	2016년 4월 29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4월 28일(목)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반복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 4월 28일부터 심판수수료 반환제도 시행 -

창업초기(start-up) 기업 A사는 새로 개발한 제품의 기술, 디자인, 표장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특허, 디자인, 상표 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였다. 심사관의 결정에 억울함을 느낀 A사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거절결정이 반복되었다. A사는 심사관의 잘못으로 인해 불필요한 심판을 하게 되었으니 심판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심판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허심판원(원장 신진균)은 4월 28일 심결부터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반복되면,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0일부터는 특허·실용신안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간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또는 청구인의 귀책없이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반복된 경우 등에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다. 특허심판원은 규제개혁신문고의 국민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4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6월에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거절결정이 반복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받고, 심리종결 전 심판청구를 취하는 경우 등에도 심판청구료의 50%를 반환받게 된다. 심판청구료를 반환받기 위해서 청구인은 온라인(www.patent.go.kr-수수료관리-수수료반환)에서 신청하거나 우편·방문접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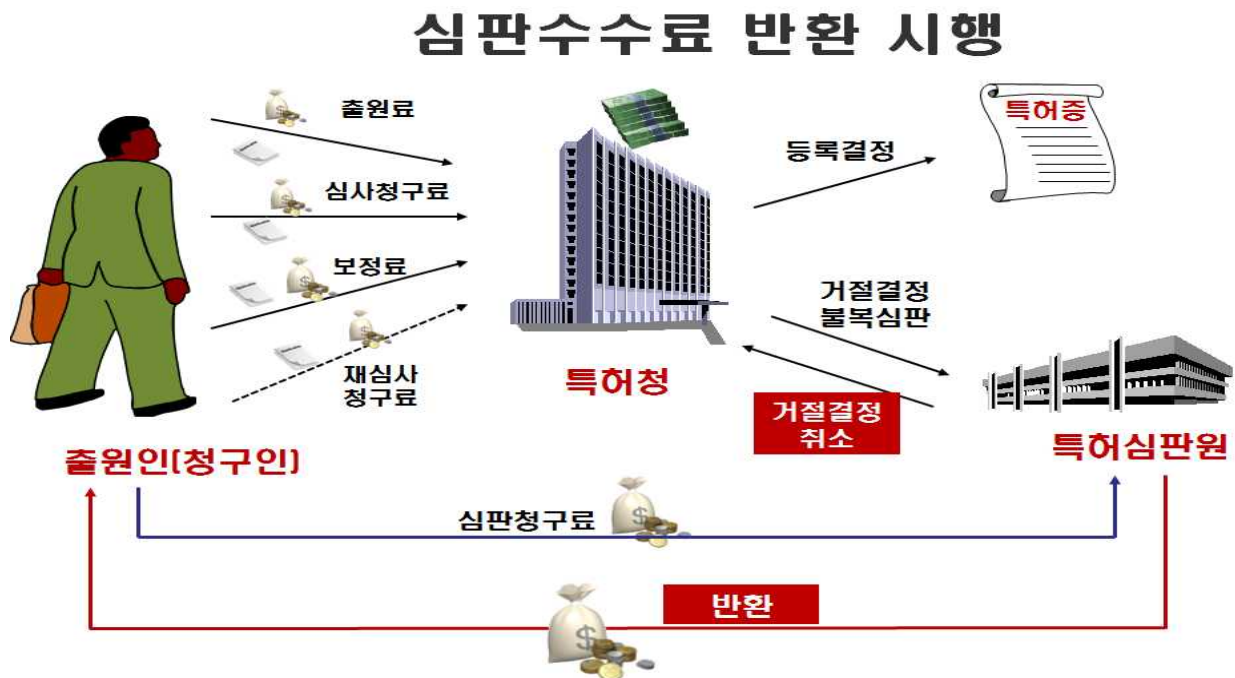
특허심판 1건당 평균 약 30만원, 상표와 디자인심판 1건당 약 24만원의 심판청구료가 드는데, 전체적으로 추산하면 특허(약 4.5억원), 상표(약 5.4억원), 디자인(약 0.2억원) 등 연평균 총 10억원의 수수료 반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의 심사가 잘못 되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그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았다.”며 “특허심판원은 국민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심판제도를 개선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1. 개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의 주요내용
2. 심판관련 수수료 요약

<붙임 1>

개정 상표법[시행 2016.4.28.] [법률 제13848호]의 주요내용
 개정 디자인보호법[시행 2016.4.28.] [법률 제13840호]의 주요내용
 개정 특허법[시행 2016.6.30.] [법률 제14112호]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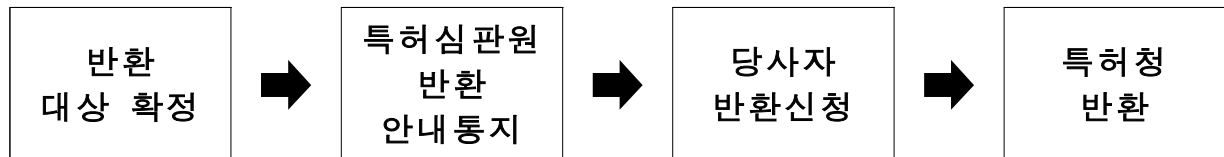


□ 심판수수료 반환을 위한 법 개정

- (내용) 심사관의 거절결정 등이 취소된 경우(보정 제외) 전액 반환, 심리종결을 통지받기 전 심판청구/당사자참가신청이 취하된 경우와 심판청구가 각하결정 또는 당사자참가신청이 거부결정된 경우 반액 반환
- (시행시기) 법 시행 후(상표·디자인 4.28., 특허·실용신안 6.30.) 최초로 거절결정 등이 취소된 심판, 법 시행 후 최초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참가신청이 거부결정된 심판, 법 시행 후 심리종결을 통지 받기 전까지 최초로 참가신청을 취하하거나 심판청구를 취하한 심판부터 적용

□ 심판수수료 반환을 위한 안내 및 신청절차

- 반환대상이 발생하면 우선 특허심판원이 당사자에게 안내하고, 당사자는 온라인/서면을 통해 반환신청하면, 특허청에서 당사자 은행계좌로 반환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수수료반환신청 화면

특허로 바로가기 로그인 인증서등록 facebook twitter HOME My특허로 마이안내

특허로 출원부터 등록, 수수료납부까지 편리하게!

통합검색 검색

사용자 등록/변경 출원신청 특허관리 증명서발급 수수료관리 고객센터 전체메뉴보기

수수료관리
특허수수료 온라인납부 및 자동납부신청 안내

○ 수수료정보안내
○ 수수료납부
○ 수수료반환
반환대상 확인 및 신청
신청내역조회
반환대상 확인

○ 수수료정정신청
○ 수수료자동납부
○ 수수료마일리지
○ 지식재산포인트
○ 가상계좌정보조회

반환대상 확인 및 신청
온라인으로 수수료 반환대상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발급 받은신분은 인증서 로그인 후 사용하시고 미신고자인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특허로·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반환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인	* 성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예) 4-2000-551789-1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번호 ☐ 사업자번호
	* 주민등록번호	예) 710809-1234567
	* 전화번호	- -
주소	* 주소	도로명검색
	* 출원번호/국제출원번호	☒ 출원번호 ☐ 국제출원번호 ☐ 등록 또는 심판번호
	* 출원번호	예) 20-2000-1234567 예) 20-2000-1234567
권리의 표시	* 납부자번호	0131- - - - 예) 2-1-2001-1234567-89
	* 반환신청액(원)	예) 10000 숫자로 기입
* 반환발생 사유		
* 은행/계좌번호		
통장사본		
위임장		
수수료납부영수증		
신분증		

* 필수입력사항

재작성 신청

상표법

[시행 2016.4.28.] [법률 제13848호, 2016.1.27., 일부개정]

제38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0.1.27., 2016.1.27.>

1. ~ 2. (생략)

3. 제82조의3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이 취소된 경우(제85조의2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5조제3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심판청구가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85조의2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77조의18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85조의2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제77조의18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85조의2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85조의2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표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을 위한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부칙 <법률 제13848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적용례)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이 취소된 심판청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판청구가 결정으로 각하된 경우의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각하결정이 확정된 심판청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의 적용례) 제3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하한 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5조(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의 적용례) 제3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의 적용례) 제3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하한 심판청구부터 적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16.4.28.] [법률 제13840호, 2016.1.27., 일부개정]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6.1.27.>

1. ~ 3. (생략)

4. 제157조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보정 또는 제12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심판청구가 제128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특허법

[시행 2016.6.30.] [법률 제14112호, 2016.3.29., 일부개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5.18., 2016.3.29.>

1. ~ 6. (생략)

7.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17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심판청구가 제141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9.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0.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1.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실용신안법

[시행 2015.7.29.] [법률 제13088호, 2015.1.28., 일부개정]

제20조(「특허법」의 준용)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붙임 2>

심판관련 수수료 요약

<심판청구료>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거절·무효· 정정·권리 범위 등	보정 각하	거절·무효· 취소·권리 범위 등	보정각하	거절·무효· 취소·권리 범위 등	보정각하
전자문서 제출	기본료	150,000원 (건당)	200,000원 (건당)	240,000원 (1디자인 마다)	200,000원 (건당)	240,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200,000원 (건당)
	가산료	15,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서면제출	기본료	170,000원 (건당)	220,000원 (건당)	260,000원 (1디자인 마다)	220,000원 (건당)	260,000원 (1상품류 구분마다)	220,000원 (건당)
	가산료	15,000원 가산 (청구범위 1항마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전자문서 제출 : 250,000원(건당), 서면 제출 : 270,000원(건당)

※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청구한 무효심판청구료 : 매건 11,000원 (특허 : 2006.10.01. 이후 설정등록된 경우 / 실용신안 : 2006.10.01 이후 출원된 경우)

<참가신청료>

※ 당사자 참가 : 매건당 전자 142,000원 / 서면 150,000원